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21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6월 3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구민이 우리나라의 국기,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 및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국기 게양일의 지정(안 제4조)
- 다.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(안 제5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817-1474, E-mail : [chlgus64@dongjak.go.kr](mailto:chlgus64@dongjak.go.kr)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 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대한민국의 국기”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2. “국기선양”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**제4조(국기의 게양일 등)**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
2. 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날(매년 4월 1일)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

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의 자율에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노력한다.

**제5조(국기선양사업 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

2. 국기 사랑 및 국기달기 운동 추진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국기 계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6조(국기계양대 설치 권고 등)**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계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계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)**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